

광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648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봉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규련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2.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단91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8,25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2023.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695,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5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2022.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대출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이하 각 아래 번호로 대출계약을 특정하고, ‘○번 대출계약’이라 한다).

- ① 2017. 11. 23. 3,600만 원(계좌번호 1 생략)
- ② 2017. 11. 28. 2,900만 원(계좌번호 2 생략)
- ③ 2017. 11. 30. 2억 원(계좌번호 3 생략)

2) 원고는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E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1)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선박인 F(어선번호 G)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20. 3. 19. 이 법원 C로 위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20. 11. 11. 101,439,085원을 배당받았다.

3) 피고는 2020. 10. 12.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는 배당기일(2020. 11. 11.)까지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① 38,073,175원(=원금 36,000,000원 + 이자 2,073,175원)

② 30,670,058원(=원금 29,000,000원 + 이자 1,670,058원)

③ 211,517,643원(=원금 200,000,000원 + 이자 11,517,643원)

다. E의 대위변제와 이에 따른 배당액 지급

1) E는 2020.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①번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31,946,449원, ②번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25,716,032원, ③번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177,554,80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③번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2017. 12. 1. F 어선원부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은 상기 E 시설자금 특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선박에 설정된 건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대상이지만,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생략하고 대위변제 이행 후 낙찰에 의한 배당금 수령 시 피고의 우선변제채권 선 정리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E에게 송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서(이하 '이 사건 약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11. 위 경매절차에서 101,439,085원을 배당받은 후 22,690,985원을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78,748,100원을 위 확약서에 따라 E에게 지급하였다.

라. ③번 대출계약의 취소

1) 피고의 지점장 D은 원고를 기망하여 ③번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사기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51)을 선고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지방법원 2021노448, 대법원 2021도604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③번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③번 대출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합11256 판결).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광주고등법원 2021나225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③번 대출계약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1,439,085원 중 ①번 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의 각 대출잔액 합계 68,743,233원(=38,073,175원 + 30,670,058원)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2,695,852원(=101,439,085원- 68,743,233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 각 대출계약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여신성가지급금(원화대출) 채무 8,035,873원, 여신성가지급금(신용카드) 217,209원, 합계 8,253,082원의 채무(이하 위 각 채무를 통틀어 ‘여신성가지급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0. 11. 30.에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배당금을 여신성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E로부터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 받았고,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위임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며, 위 배당금에서 원고의 잔존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78,748,100원을 위 확약서에 따라 E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2) ③번 대출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지급하고 남은 배당금 22,690,985원에서 잔존 대출금채무 11,080,752원에 충당한 나머지 11,610,233원만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머지 21,085,619원을 피고가 아닌 E에 청구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0. 11. 30. 피고에게 여신성가지급금 채무 8,253,082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1,439,085원 중 ①번 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의 각 대출잔액 합계 68,743,233원(=38,073,175원 + 30,670,058원)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2,695,852원(=101,439,085원- 68,743,233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2,695,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으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참조).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로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이 때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2020. 3. 19.자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E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①번 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 ③번 대출계약의 각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E는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경로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한편,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을 채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의 범위에는 ‘배당참가,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면 피고의 우선변제채권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E에게 송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E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경매신청 이전에 E로부터 대위변제받은 ①번 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 ③번 대출계약의 각 대출금채무액에 대하여도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대위변제자인 E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 채권액까지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비록 피고와 E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 내지 위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배당채권자는 E가 아닌 피고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가 취득한 구상권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점을 집행법원에 알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채권자가 아닌 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2,695,85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24,442,7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8,253,082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오정민, 판사 정수현